

경기도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(무상)

누구에게나 열린 출입구를 만듭니다

작은 변화가 모이면
모두의 일상은 더 편해집니다

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
KAPPD 법인 GyeongGi-Du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

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지원
도민축전단

TEL:031-307-7779 | FAX:031-246-7721 | 홈페이지: <http://www.kgppd.or.kr/kgppd/>

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0(고색동), DH테크타워 201호



신청 공고 링크

-  **지원대상** 단차, 계단 등으로 이동약자들이 출입 불가능한 생활밀착형시설*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
*음식점, 편의점, 약국, 이·미용업소, 전통시장, 마을회관, 점포 등 생활밀착형 시설
단 법령에 의한 편의시설 의무대상업소 (예: 300㎡이상)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 **지원내용** 경사로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%(업소당 450,000원 한도) 지원
-  **접수기간** 2026.6.15.~예산 소진 시 까지(기한내 목표건수 265건 미달시 연장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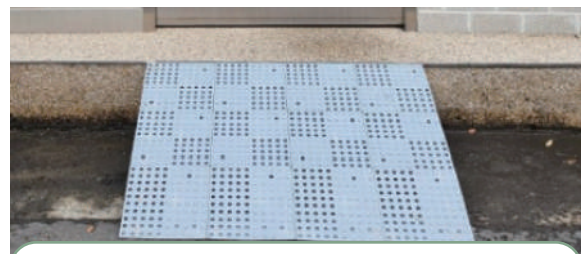
모두의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진행과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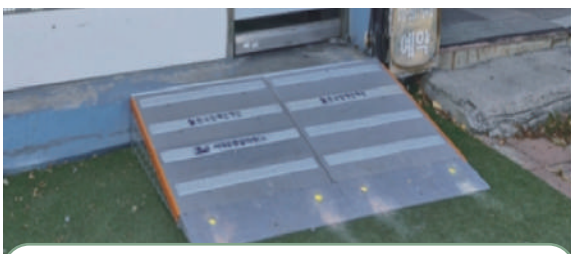
「경기도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」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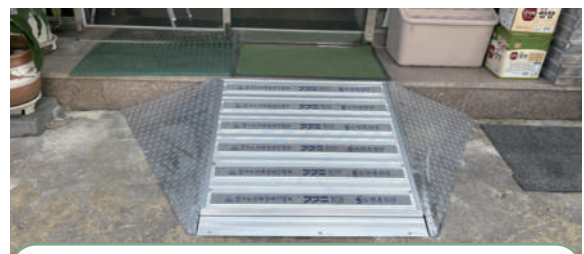
PE경사로



조립식 경사로



PE(고강도 플라스틱) 경사로



알루미늄 경사로

작은 턱을 낮추는 큰 변화

기대효과

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
이동약자의 시설 접근성 향상

사회참여 기회 확대



편의시설 사각지대 해소

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
자립생활 지원



무장애 생활환경 조성

공공 민간의
편의증진 문화 확산



지역 간 편의시설 격차 완화

안전사고 예방 및
이용 편의 증진

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**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** 경우는 **장애인 차별행위**에 해당한다. **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·도구·서비스 등 제반 조치**를 말한다.

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 4조

「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」은?

장애인복지법 제 23조 제 1항 및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근거한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 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

1. 편의시설 이용자 불편,개선 등에 대한 도민의 의견수렴 및 보고
2.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를 통한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
3.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반 시설주에 대한 신고 및 계도활동
4. 시설 설치 주관기관(시·군)에 신고 및 의견 제시
5.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및 계도활동
6.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

도민촉진단은 (사)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와 각 시군지회 총 128명의 단원이 활동중입니다.

지원신청서

아래 신청내용을 작성하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현장 출입구 사진(출입구 주변상황을 포함하여 4건 이상)과 함께 각 시군지회에 발송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상호	성명	연락처	생년월일
소재지			
업종	개업일자	사업자등록번호	사업장면적
건축물대장			
단차	출입구 폭	출입문 구조	희망하는 타입
cm	cm	완전자동() 터치식자동() 수동미닫이() 수동여닫이()	
기타 참고사항(공공기관 인증·평가 정보, 미담사례 및 상권정보 등)		위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명 바랍니다.	서명